

비용 정산에 관한 합의서

(주)아이피에스와 (주)비즈아이코리아는 는 2004년 생산정보화의 사업비 사용 내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합니다.

- 다 음-

(단위: 원)

구 분	협약 금액	실 사용금액
S/W개발비	54,000,000원	55,393,522원
S/W구입비	3,650,000원	1,285,000원
H/W구입비	10,000,000원	12,000,000원
N/W구입비	-원	-원
기타비용	30,000,000원	30,000,000원
감 리 비	3,300,000원	3,300,000원
합 계	100,950,000원	101,978,522원
차 액	1,028,522원	

■ 상기와 같이 협약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IT업체인 (주)비즈아이코리아가 부담합니다.

2004년 11월 일

참여기업: (주)아이피에스 교교

대표이사 장호등

IT업체 : (주)비즈아이코리아()

대표이사 최당현

SEOUL GUARANTEE INSURANCE COMPANY

이행(하자)보증보험증권

대한민국정부 XI. 2 0 0 원 종로세무서장 인쇄승인 제2003-1호

증권번호 제 115-023-200400009902 호

	110 020 200400000002					
보험계약자	117-81-27422 (주)비즈아이코리아 . 최당혁	피보험자	125-81-182 (주)아이피			
보험가입금액	金 壹阡九萬五阡 원整 ₩10,	九萬五阡 원整 ₩10,095,000-		W 96,910-		
보 형 기 간	2004년 11월 25일 부터 2005년 11월 24일 까지 (365일간)					
보증 내용	하자보증금					
특별약관	※해당사항없음					
특기사항	※해당사항없음					
주계약내용						
계약명	자재,구매조달 선진화를위한SCM 구축					
하자담보기간	2004년11월25일부터 2005년11월24일까지					
계약체결일자						
	₩100,950,000-					
하자보증금율						

우리 회사는 이행(하자)보증보험 보통약관, 특별약관 및 이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체결하였음이 확실하므로 그 증으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.

이행(하자)보증보험계약을

25 일

※ 증권발급 사실 확인 안내

증권발급부서: 115 남대문지점

H 장: 김욱기 담 자: 조영록 전 화 번 호: 02-756-4151

서울 중구 서소문동 58-7 동화빌딩 14층

취급 대리점: S88 은희



※증권발급 사실확인은 www.sgic.co.kr 사이버지점에서 "보증서 건별 조회"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대표이사 사장의 서명이 인쇄되지 아니하였거나 <mark>보험증권상의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기간이 정정된 것은 무효이며</mark>,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기간 이외의 기재내용이 정정된 경우에는 증권발급부서에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본 증권의 내용이 주 계약의 내용과 일<mark>치하는 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, 내용이 일치되지 아니</mark>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

이행(하자)보증보험

보통약관

Ⅰ. 피보험자 관련사항

- 1. (보상하는 손해) 우리 회사(이하 "회사"라 합니다)는 채무자인 보험계 약자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 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(이하 "주계약"이라 합니다)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.
- 2. (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)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.
 - ① 천재지변 \cdot 전쟁 \cdot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하자를 보수 또는 보완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손해
 - ②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
 - ③ 10의 (2)에 규정된 사유에 기인한 손해
- 3. (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) (1)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의 방 지에 힘써야 하며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 야 합니다
 - (2) 피보험자가 위 (1)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회사가 보상하여 드립니다.
- 4. (보험금의 청구) (1)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.
 - ① 보험금 청구문서
 - ② 보험증권 또는 그 사본
 - ③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
 - (2) 이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.
- 5. (보험금 지급액) (1)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 의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 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.
 - (2) 위 (1)의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.
 - (3)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잔존보험가입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험기간 안에 입은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.
- 6. (보험금의 지급시기) 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, 피보험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. 그러나,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% 이상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.

Ⅱ. 보험계약자 관련사항

- 7. (보험료) 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내어야 합니다.
- 8. (보험료의 환급) (1) 회사는 이 보험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.
 - ①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때
 - ②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, 회사의 책임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
 - (2)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증권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(3) 회사가 돌려드릴 보험료는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보험기간 개시 일로부터 보험증권이 반환된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(최저 보험료가 경과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보다 많은 때에는 최저 보험료)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.

Ⅲ. 공통사항

9. (보험계약의 효력상실) 이 보험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

- 생긴 때에는 그 때부터 이 보험계약은 효력이 상실됩니다. 그러나 서면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① 피보험자의 변경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된 때
- ② 계약자, 계약금액 등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
- **10.** (손해의 조사) (1)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- (2)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(1)의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.
- 11. (구상 및 대위) (1)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,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.
 - (2) 피보험자는 위 (1)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 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 니다
 - (3) 회사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(2)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회사가 위 (1)의 대위권에 의한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을 금액 중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피보험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12. (분쟁의 조정)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와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, 기타 이해 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13. (관할법원)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소 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 다만,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회사와 관할법원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에따릅니다.
- 14. (준거법)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.

보험금지급 특별약관

- 1. (적용범위)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1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 (하자)보증보험계약에 한하여 적용합니다.
 -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 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% 이상을 출자한 기관 (이하 "정부투자기관"이라 합니다)
 - ③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총액이 자본금의 20% 이상인 기관
 -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연금·보조금·장려금·조성금 등을 재정지원하는 기관
 - ⑤ 민법 또는 상법이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의 인가·승인·관리·감독 등 을 받는 기관
- 2. (보험금 지급액) (1) 회사는 피보험자가 하자보증금을 귀속시켜야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행(하자)보증보험 보통약관의 면책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귀속시켜야할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.
 - (2)위 (1)의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.
- 3. (준용규정)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행(하자)보증보 험 보통약관을 따릅니다.

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

- 1. (보험료의 분할납입)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합의한 방법에 따라 보험기간 안에 연간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, 초회분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납입하여야 합니다.
- 2. (준용규정)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행(하자)보증보 험 보통약관을 따릅니다.